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선방안*

고 동 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감면액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안은 현행 제도에서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의 감면비율은 현재의 100%에서 모두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해당 기업에게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보다 많지 않는 수준까지 낮춘다. 두 번째 신고한 기업의 경우는 현행 50%에서 감면해 주지 않는다. 두 번째 방안은 신고순서와 상관없이 신고 기업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신고한 기업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의 일정 금액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의 경우,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은 다른 기업이 모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지만 그 비율은 아주 적어도 된다.

주제분류 : B030200

핵심 주제어 : 자진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 담합, 죄수의 딜레마

I. 서 론

게임이론에서 '죄수의 딜레마'는 두 명의 공범자가 각자 다른 취조실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자백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임을 말한다. 이 게임에 서는 자백하는 것이 두 공범자에서 지배전략임으로 균형에서 모두 자백하지

* 유익한 심사평을 해 주신 두 분의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사를 드림. 또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 주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총괄과 이 선미 서기관께도 감사사를 드림.

** 한양대학교(ERICA 캠퍼스)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e-mail: dhkoh@hanyang.ac.kr

4 고 동 회

만, 자백함으로써 둘 다 모두 부인했을 때보다 더 오랜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게임이론 교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임 중의 하나이다.¹⁾

미국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범죄자로 하여금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사전형량 조정제도(plea bargaining)’를 사용함으로써 자백을 유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이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를 시행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행 제도는 자백순서에 따라 감면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신고하는 기업은 과징금의 100%, 두 번째 신고한 기업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²⁾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가 적용된 담합 건수는 2012년 12건, 2013년 24건, 2014년 38건, 2015년 48건,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조사되었다.³⁾ 하지만 현행 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담합 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가장 먼저 신고하면 전액, 두 번째로 신고하면 50% 감면해 줌으로써 감면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진 신고를 해서 감면 받은 과징금은 8천709억원으로 나타났다.

1) 공범자들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모르며, 언제 얼마의 형량을 선고받는지 알고 있음.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세(2011), 디시트·네일버프(2009), 맥케인(2010)을 참조하기 바람.

2) 국내에서 리니언시 제도는 1997년 도입되었음. 2007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i)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작 전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 조치의 면제, ii)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작 후 최초 조사협조자에게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iii)조사시작 전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조사시작 후 두 번째 조사협조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 경감해 주고 있음(손영화, 2010 참조). 현행 제도에서는 신고기간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음. 다만 첫 번째 신고한 기업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신고는 첫 번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만 감면해 줌.

3) “기업, 담합 후 자진신고로 감면 받은 과징금 5년간 8천709억 원.” 연합뉴스, 2016년 10월 11일자.

둘째,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 지라도 먼저 신고하면 면죄부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누가 먼저 신고하는가에 대하여 또 다른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서 28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으로 4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삼성물산은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해 과징금 835억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삼성물산은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공정위에서 담합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함으로써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가스공사 LNG 탱크 건설 입찰 담합에서 두산중공업은 가장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뒤, 이 사실을 다른 기업들에 알렸다. 범위반 소지가 있어서 공정위는 두산의 과징금 면제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후 '개인적 일탈'이고 담합 적발에 기여한 점이 더 크다며 과징금을 다시 면제해 주었다. 또 다른 예로 노래방 반주기 업체 두 곳은 아예 순위를 정해 담합을 신고하고 과징금을 나눠낸 경우도 있다.⁴⁾

손영화(2010)는 국내에서의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변천 과정과 함께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 가지 방안으로서 과징금액이 클수록 과징금 감면을 받기 위한 유인책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액수를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선희(2013, 2016)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징금과 함께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본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책임도 경감해 주는 방안을 해석론 및 입법론 등 법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효원·최윤정(2014)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담합의 적발율을 향상시켰음을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제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첫 번째 방안은 현행 제도에서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의 감면비율은 현재의 100%에서 모두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해당 기업에게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보다 많지 않는 수준까지 낮춘다. 두 번째 신고한 기업의 경우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두 번째 방안은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비율에 차등을 두기보다 신고 기업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신고한 기업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업

4) "정보력 없으면 뒤통수, 얽매 자진신고 논란," SBS 뉴스, 2016년 10월 17일자.

으로 하여금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의 일정 금액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의 경우,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 뿐 아니라 제시된 첫 번째 방안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은 다른 기업이 모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지만, 추가 부담 비율은 0보다 크면 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3개 기업이 담합한 경우의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도출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세 개의 기업 A, B, C 가 담합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를 밝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 하지만 현재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자진 신고로 담합사실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다. 세 기업은 담합 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할 지, 또는 신고하지 않을 지를 다른 기업이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한다. 한 기업이라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세 기업 모두에게 각각 200억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의 자료를 토대로 10억원의 과징금만을 징수할 수 있다.⁵⁾

1. 자진신고 감면제도 실시 전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없는 경우의 정상형은 다음과 같으며 세 기업 모두 신고하는 것, 세 기업 모두 신고하지 않는 것, 두 기업만 신고하는 것 등 모두 다섯 개의 내쉬 균형이 있다. 하지만 ‘신고 함’이 약 열위 전략임으로 약 열위전략의 단계적 소거법을 이용하면, 모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균형이 되며, 총 과징금은 30억원이다.

5) 각주 1)에서 설명한대로 담합기업들은 언제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되는지를 알고 있음.

〈표 1〉 자진신고 감면제도 실시 전(Before Leniency Program)

		• 기업 C가 신고한 경우		• 기업 C가 신고안한 경우	
		기업 B		기업 B	
		신고 함	신고 안 함	신고 함	신고 안 함
기업	신고 함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A	신고 안 함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 -10, -10

2. 자진신고 감면제도 실시 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 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신고한 순서에 따라 감면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또는 한 기업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전액, 즉 과징금의 100%를 감면해준다. 두 번째로 신고한 기업에게는 50%, 세 번째로 신고한 기업에게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이 게임은 대칭임으로 모든 분석에서의 설명은 편의상 기업 A의 관점에서 한다.

개별 기업은 다른 기업이 신고했는지를 모름으로 기업의 보상은 기대 과징금이 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기업 모두 신고한 경우, 기업 A가 가장 먼저 신고했을 확률, 두 번째로 신고했을 확률, 그리고 세 번째로 신고했을 확률이 모두 $\frac{1}{3}$ 이다. 한편 가장 먼저 신고했다면 과징금 전액이 감면됨으로 과징금이 0원, 두 번째로 신고했다면 50% 감면됨으로 과징금은 100억원, 세 번째로 신고했다면 감면 받지 못함으로 과징금은 200억 원이다. 따라서 기대 과징금은 $\frac{1}{3}(0+100+200) = 100$ 억 원이다. 둘째, 두 기업이 신고한 경우, 기업 A가 가장 먼저 신고했을 확률, 두 번째로 신고했을 확률이 각각 $\frac{1}{2}$ 이며, 가장 먼저 신고했다면 과징금은 0, 두 번째로 신고했다면 과징금은 100억 원임으로 기대 과징금은 $\frac{1}{2}(0+100) = 50$ 억 원이다. 셋째, 한 기업만 신고한 경우는 기업 A만이 신고했으므로 전액 감면 받기 때문에 과징금은 0원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의 정상형은 다음과 같으며 ‘신고 함’이 지배전략임으로 모두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 균형이다. 이때의 과징금은 모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징금보다 크다. 따라서 현행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기업들로 하여금 죄수의 딜레마와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자진

해서 신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균형에서 실제로 징수하는 과징금은 300억 원으로, 감면제도를 실시하기 전의 과징금 30억 원보다 많다.

〈표 2〉 자진신고 감면제도 실시 후(After Leniency Program)

		• 기업 C가 신고한 경우		• 기업 C가 신고안한 경우	
		기업 B		기업 B	
		신고 함	신고 안 함	신고 함	신고 안 함
기업 A	신고 함	-100, -100, -100	-50, -200, -50	-50, -50, -200	0, -200, -200
	신고 안 함	-200, -50, -50	-200, -200, 0	-200, 0, -200	-10, -10, -10

하지만 자진 신고한 순서에 따라 감면액에 차등을 두는 현행 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담합 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가장 먼저 신고하면 전액, 두 번째로 신고하면 50% 감면해 주는 것은 감면 비율이 너무 커서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이 모형에 의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총 과징금의 50%만 징수할 수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진 신고를 해서 감면 받은 과징금은 8천709억 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 지라도 먼저 신고하면 면죄부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누가 먼저 신고하느냐에 대하여 또 다른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Ⅲ. 개선 방안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감면비율의 조정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본다. 순서에 따라 차등을 주는 것에 따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다른 기업이 신고한 경우, 신고한 기업들이 감면 받은 과징금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징벌적 과징금제')를 제시해 본다. 두 번째 방법은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가정 1: 공정거래위원회의 목표는 기업을 하여금 담합사실을 자백하도록 하면서, 과징금을 최대한 많이 징수하는 것이다.

가정 2: 기업은 신고할 때와 신고하지 않을 때의 과징금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다.

가정 3: 징벌적 과징금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을 추가 부담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경우에는 부담 시키지 않는다.

가정 2는 다수의 내쉬 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 3은 가정 2에서 선택된 내쉬 균형에서 가능한 변수 조합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이 가정들은 논문의 주요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감면비율의 조정

첫 번째 방법은 현행 제도에서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비율을 달리하되,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먼저 신고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100 \times x)\%$, 두 번째로 신고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100 \times y)\%$ 라고 하자.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1 \geq x \geq y \geq 0$ 이며 현행 제도는 $x = 1, y = 0.5$ 이다.

첫째, 세 기업 모두 신고한 경우, 기업 A가 가장 먼저 신고했다면 과징금의 $(100 \times x)\%$ 가 감면됨으로 과징금이 $200(1-x)$ 억 원, 두 번째로 신고했다면 $(100 \times y)\%$ 가 감면됨으로 과징금은 $200(1-y)$ 억 원, 세 번째로 신고했다면 감면 받지 못함으로 과징금은 200억 원이다. 각각의 확률이 $\frac{1}{3}$ 임으로 기대 과징금은 $\frac{1}{3}[(200(1-x) + 200(1-y) + 200)] = \frac{600 - 200(x+y)}{3}$ (=㉑)억 원이다.

둘째, 두 기업이 신고한 경우, 기업 A가 가장 먼저 신고했을 확률, 두 번째로 신고했을 확률이 각각 $\frac{1}{2}$ 이며, 먼저 신고했다면 과징금은 $200(1-x)$ 억 원, 두 번째로 신고했다면 과징금은 $200(1-y)$ 억 원임으로 기대 과징금은 $\frac{1}{2}[(200(1-x)+200(1-y))]=\frac{400-200(x+y)}{2}$ (=㉞)억 원이다. 셋째, 한 기업만 신고한 경우, 신고한 기업 A는 $(100 \times x)\%$ 를 감면 받음으로 과징금은 $200(1-x)$ (=㉟)억 원이다.

〈표 3〉 감면비율의 조정(Adjustment of Reduction Rate)

		· 기업 C가 신고한 경우		· 기업 C가 신고안한 경우	
		기업 B		기업 B	
		신고 함	신고 안 함	신고 함	신고 안 함
기업 A	신고 함	-a, -a, -a	-b, -200, -b	-b, -b, -200	-c, -200, -200
	신고 안 함	-200, -b, -b	-200, -200, -c	-200, -c, -200	-10, -10, -10

최수의 딜레마 게임이 되려면 세 기업에게 ‘신고 함’이 지배전략이 되어야 함으로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frac{600 - 200(x + y)}{3} < 200 \tag{1}$$

$$\frac{400 - 200(x + y)}{2} < 200 \tag{2}$$

$$200(1 - x) < 10 \tag{3}$$

(3)에 의하여 $x > 0.95$ 이다. (1)과 (2)는 $x + y > 0$ 에서 모두 만족되며, 이 조건은 $x > 0.95$ 이면 $y = 0$ 에서도 만족된다. 따라서 적정 감면비율은

$$(x^* > 0.95, y^* = 0)$$

이며, 이때의 총 과징금은 $600 - 200(x + y) > 410$ 억 원으로 현행 제도의 과징금 300억 원보다 많다.⁶⁾ x 의 하한 값인 0.95는 한 기업만 신고한 경우의 과징금이 모든 기업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 기업에게 징수할 수

6) 이러한 결과는 기업 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있는 과징금과 같도록 하는 값이다.⁷⁾ 또한 두 번째로 신고한 기업에게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제도에서 먼저 신고하는 기업에게 100%, 두 번째 신고하는 기업에서 50% 감면해 주는 것은 너무 많음으로 감면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개선방안 1: 감면비율의 조정〉 **현행제도에서와같이신고순서에따라감면비율에차등을두는경우, 가장 먼저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해당 기업에게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보다 많지 않도록 감면 비율을 충분히 크게 하되, 두 번째 신고한 기업부터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2. 징벌적 과징금제

두 번째 방법은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비율을 달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고 순서와 상관없이 신고한 기업의 수에 따라 감면액에 차등을 두되, 한 기업이라도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i) 세 기업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모든 기업에게 과징금의 $(100 \times c)\%$ 을 감면해 준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과징금은 $200(1-c)(=a')$ 억 원이다.

(ii) 두 기업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의 $(100 \times b)\%$ 를 감면 받지만,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자신의 과징금 200억 원과 함께 두 기업이 감면 받은 총 과징금, $2 \times (200b)$ 억 원의 $(100 \times C)\%$ 를 추가로 부담한다. 따라서 신고한 기업의 과징금은 $200(1-b)(=b')$ 억 원, 신고하지 않은 기업의 과징금은 $200 + 400bC(=d)$ 억 원이다.

(iii) 한 기업만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업은 $(100 \times a)\%$ 를 감면 받지만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자신의 과징금과 함께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7) 모두 부인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0이면 감면비율은 100%이며, 이 경우에는 '신고 함'이 약 우월(지배)전략이 됨. 하지만 이 경우에도 $y^* = 0$ 은 동일함으로 두 번째 신고한 기업에게는 감면해 주지 않아도 됨.

과징금, $(200a)$ 억 원의 $(100 \times B)\%$ 를 반 반씩 추가로 부담한다. 따라서 신고한 기업의 과징금은 $200(1-a)(=c')$ 억 원, 신고하지 않은 기업의 과징금은 $200 + 100aB(=e)$ 억 원이다.

〈표 4〉 징벌적 과징금제(Penalty Program)

		• 기업 C가 신고한 경우		• 기업 C가 신고안한 경우	
		기업 B		기업 B	
		신고 함	신고 안 함	신고 함	신고 안 함
기업 A	신고 함	$-a', -a', -a'$	$-b', -d, -b'$	$-b', -b', -d$	$-c', -e, -e$
	신고 안 함	$-d, -b', -b'$	$-e, -e, -c'$	$-e, -c', -e$	$-10, -10, -10$

현행 제도에서와 같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200(1-c) < 200 + 400bC \tag{4}$$

$$200(1-b) < 200 + 100aB \tag{5}$$

$$200(1-a) < 10 \tag{6}$$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변수 값의 조합은 세 가지이나 〈부록 1〉에서 다음 조합이 선택됨을 보여준다.

$$\{a^* > 0.95, \{b^* > 0; B^* = 0\}, \{c^* = 0; C^* > 0\}$$

따라서 감면비율은 첫째, 한 기업만 신고한 경우에 크게 해 주되, 비율은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한다. 둘째, 두 기업이 신고한 경우에는 0보다 크도록 한다. 셋째,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0이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은 다른 기업이 모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추가 부담 비율은 0보다 크면 된다.⁸⁾⁹⁾ 이때의 총 과징금은 $3 \times [200 \times (1-c)] = 600$ 억 원으로 개

8) 신고기간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면 “담합기업 중 한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신고할 때 까지”로 하여야 함. 하지만 실제로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몇 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문제는 다음

선방안 1보다 많다.

〈개선방안 2: 징벌적 과징금제〉 징벌적 과징금제에서 감면비율은 (i) 한 기업만 신고한 경우에 크게 해 주되, 비율은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한다. (ii) 두 기업이 신고한 경우의 감면비율은 0보다 크도록 하며, (iii)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0으로 한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과징금 추가 부담은 다른 기업이 모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추가 부담 비율은 0보다 크면 된다.¹⁰⁾

I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간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간단한 게임 모형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징수되는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것과 순서에 따라 감면비율에 차등을 둬으로써 신고하는 순서에 대하여 또 다른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현재와 같이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비율에

과 같이 해결할 수 있음. $B^* = 0$ 인 것은 부록 1에서 설명한대로 가정 3에 의한 것임. 만약 이 가정이 없으면 부록 1의 (ii-1)에서와 같이 $B^* \geq 0$, 즉 한 기업만이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과징금 비율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됨. 따라서 $B^* > 0$ 로 하면, 한 기업이라도 신고하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제는 $B^* = 0$ 인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됨. 결과적으로 $B^* > 0$ 로 하는 경우, 신고기간을 공시할 필요성이 적어지며, 만약 필요하다면 신고기간을 “한 기업이 신고 할 때 까지”로 할 수 있을 것임.

- 9) 〈부록 2〉에서는 담합 기업이 4개인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발생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n 개 기업이 담합한 경우에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10) 미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추가 가중’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손영화, 2010). 하지만 이 제도는 하나의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신이 가담하고 있는 다른 담합 사건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에 가중하는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은 기업이 자백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차등을 두되,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신고 기업의 수에 따라 감면비율에 차등을 두면서 다른 기업이 신고한 상황에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과징금제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¹¹⁾ 두 방안 중에서 두 번째 방안은 더 많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시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로 추가 부담은 한 기업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필요하며 부담 비율은 아주 적게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에서는 담합 행위가 한 번만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다른 건으로 동일기업 또는 다른 기업들과 담합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담합 행위의 자진 신고 기회를 놓친 기업이 다른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추가 신고한 경우, 조사중인 담합 사건에도 감면 혜택을 주는 추가 감면 제도를 개선하였다.¹²⁾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두 번째 신고한 기업에게 감면비율을 50%로 하는 것은 첫 번째 신고만으로 담합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고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게 감면해 줄 수 있으며, 이 비율보다 높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 모형으로 확장한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 일자: 2017. 2. 2. 심사 및 수정 일자: 2017. 3. 30. 게재 확정 일자: 2017. 4. 20.

11) 만약 자진 신고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더 확실하고 많은 량의 증거확보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가 커지게 된다면 두 번째 신고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12)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과징금 30~100% 감면," 뉴스토마토, 2016년 7월 25일자. "담합 자진신고 감면기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브리핑, 2016년 9월 27일자.

◆ 참고문헌 ◆

- 김영세 (2011), 『게임이론(5판)』, 박영사.
- Kim, Young Se (2011), *Game Theory(5th ed.)*, Seoul: Parkyoung-Sa (written in Korean).
- 로저 맥케인(이 규억 역, 2010), 『게임이론』, 시그마프레스.
- McCain, Roger(translated by Lee, Kyu Uk, 2010), *Game Theory*, Seoul: Sigma Press(written in Korean).
- 손영화 (2010),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4(2), pp.285-321.
- Son, Young-Hoa (2010), “A Study for Leniency Programs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Business Law Review*, 24(2), pp.285-321(written in Korean).
- 애비너시 디스트·베리 네일버프(이 건식 역, 2009), 『전략의 탄생』, 쌤앤파커스.
- Dixit, Avinash and Nalebuff, Barry(translated by Lee, Kun Shik, 2009), *Arts of Strategy*, Seoul: Sam and Parkers(written in Korean).
- 이선희(2013), “카르텔의 자진신고에 의한 책임감경제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성균관 법학』, 25(1), pp.27-65.
- Lee, Sun Hee (2013), “Study on Interaction between Leniency Program and Damage Claim,” *SungKyunKwan Law Review*, 25(1), pp.27-65 (written in Korean).
- _____ (2016), “담합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비교사법』, 23(2), pp.721-750.
- Lee, Sun Hee (2016), “Reduction of Tort Liability for Cartel Immunity Recipient,” *Comparative Private Law*, 23(2), pp.721-750 (written in Korean).
- 이효원·최윤정 (201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담합 적발률과 담합 형성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32(2), pp.99-124.
- Lee, Hyo Won and Yun Jeong Choi (2014), “How the New Leniency Program in Korea Affect Cartel Formation and Cartel Detection,” *Journal of Korean Economic Studies*, 32(2), pp.99-124(written in Korean).

〈부록 1〉

(6)에 의하여 이다. 따라서 (5)가 만족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begin{cases} b = 0, & B > 0 \\ b > 0, & B \geq 0 \end{cases} \quad \begin{matrix} (7) \\ (8) \end{matrix}$$

이 조건에 따라 (4)가 만족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7)의 경우에는

$$c > 0, \quad C \geq 0$$

(8)의 경우에는

$$\begin{cases} c = 0, & C > 0 \\ c > 0, & C \geq 0 \end{cases}$$

이다. 따라서

$$(i) [a^* > 0.95, \{b^* = 0; B^* > 0\}, \{c^* > 0; C^* \geq 0\}],$$

$$(ii-1) [a^* > 0.95, \{b^* > 0; B^* \geq 0\}, \{c^* = 0; C^* > 0\}]$$

$$(ii-2) [a^* > 0.95, \{b^* > 0; B^* \geq 0\}, \{c^* > 0; C^* \geq 0\}]$$

등 세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균형에서 모두 자백함으로 가정 1에 의하여 c^* 가 가장 적은 (ii-1)이 선택된다. 또한 가정 3에 의하여 $B^* \geq 0$ 에서 $B^* = 0$ 가 선택됨으로 최종 선택은 다음과 같다.

$$[a^* > 0.95, \{b^* > 0; B^* = 0\}, \{c^* = 0; C^* > 0\}]$$

〈부록 2〉

4개의 기업의 담합한 경우에는 다섯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d 는 4 기업 이 모두 자백했을 때의 감면 비율이고, D 는 세 기업이 자백했을 때, 부인한

기업이 감면된 과징금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다.

$$(i-1) [a^* > 0.95, \{b^* = 0; B^* > 0\}, \{c^* > 0; C^* \geq 0\}, \{d^* > 0; D^* \geq 0\}]$$

$$(i-2) [a^* > 0.95, \{b^* = 0; B^* > 0\}, \{c^* > 0; C^* \geq 0\}, \{d^* = 0; D^* > 0\}]$$

$$(ii-1-1) [a^* > 0.95, \{b^* > 0; B^* \geq 0\}, \{c^* = 0; C^* > 0\}, \{d^* > 0; D^* \geq 0\}]$$

$$(ii-2-1) [a^* > 0.95, \{b^* > 0; B^* \geq 0\}, \{c^* > 0; C^* \geq 0\}, \{d^* > 0; D^* \geq 0\}]$$

$$(ii-2-2) [a^* > 0.95, \{b^* > 0; B^* \geq 0\}, \{c^* > 0; C^* \geq 0\}, \{d^* = 0; D^* > 0\}]$$

가능한 변수 조합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가정 3과 함께 다음 가정을 하며, 이것은 논문의 주요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정 4: $\{b^* > 0, B^* \geq 0\}$ 및 $\{b^* = 0, B^* > 0\}$ 가 가능한 경우에는 $\{b^* > 0, B^* \geq 0\}$ 가 선택되며, $\{c^*; C^*\}$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정 1에 의하여 $d^* = 0$ 인 (i-2), (ii-2-2)가 선택되며, 이 중에서 가정 4에 의하여 (ii-2-2)가 선택됨. 마지막으로 가정 3에 의하여 최종 선택은 다음과 같다.

$$[a^* > 0.95, \{b^* > 0; B^* = 0\}, \{c^* > 0; C^* = 0\}, \{d^* = 0; D^* > 0\}]$$

Two Plans to Improve Leniency Program

Dong-Hee Koh*

Abstract

Leniency program which is used by Korea Fair Trade Committee is criticized because exemption amount is too much. In this paper, I suggest two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ogram. First and simple way is to reduce exemption rate. More specifically, the rate which is applied to the firm which reports first is reduced from current 100% to the rate which makes the amount a firm which is the first and only reporter pays not greater than the amount when no firm reports. The rate applied to the second reporter is reduced to 0 from current 50%. The second plan uses exemption rate not based on the order of reporting but the number of reporters as well as the penalty to a firm which does not report while the other firm(s) reports. The penalty rate depends on the total exemption amount of the firm which report. The exemption rate when all report is 0. The penalty rate applies only when the other firms report and the rate can be very small.

KRF Classification : B030200

Key Words : leniency program, prisoner's dilemma, collusion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at ERICA,
e-mail: dhkoh@hanyang.ac.kr